##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66

발의연월일 : 2021. 4. 22.

발 의 자:권인숙·강득구·김철민

박찬대 · 서동용 · 소병철

유기홍 • 윤영덕 • 이규민

이탄희 · 홍성국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임.

현재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된 뒤, 2022년에는 특성화고·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8조의2 신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를 교육정 책을 연구·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

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학과 등) ①・② (생 략)	제48조(학과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
	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
	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
	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
	를 운영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④ 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
	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u>&lt;신 설&gt;</u>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
	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 정한다.</u>
<u>&lt;신 설&gt;</u>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
	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
	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
	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를 교육정책을 연구·지원 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 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